

우리가 직접 만드는 3법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50만, 사업체의 60%에 이르는데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현행노조법 2조는 근로계약서만을 기준으로
사용자,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위험한 일은 외주화하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며
어쩌다 결려도 푼돈 벌금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노동자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를
처벌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무료노동상담 1577-2260
💻 <http://taeil.kctu.org/all3>

우리가 직접 만드는 D.I.Y 투쟁

Do It Yourself!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위기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며 노동자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법 개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법의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에게만 하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민 10만 명이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하면 바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직접 법을 제안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힘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을 직접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200만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